

해양경계획정에서의 형평원칙 및 관련사정 규칙

- 양타오(杨陶)

개요 : 형평이라는 법률개념은 국내법에서 기원한 것인데 국제사법의 관행을 통해 보편적인 언어체계가 해양경계획정으로 적용이 되었다. 법관들은 판결과 관행을 통해 이 형평이론을 발전시켜 왔고 형평이념이 형평원칙으로 확립되어 형평원칙과 관련사정 규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현재의 형평원칙과 관련사정 규칙은 결과의 공정을 보장하고, 관련 사정을 고려하며, 공평한 경계획정 절차와 관련 법률을 준수하는 등의 실천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인 국제 관습법이 되어가고 있다. 중국은 이 원칙을 동중국해 경계획정의 기본 주장으로서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현행 국제법의 해양경계획정과 관련된 규정은 추상적이며 응용이 어렵다. 해양경계획정은 역사, 경제, 인문, 국가 안보 등의 요소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복잡하고 민감한 속성을 가진다. 이런 상황에서 형평 원칙은 초기 일반법 체계인 국제사법관행에서 시작해 국제사법재판소와 중재재판소 대법관들의 판례와 실천을 거쳐 추상적인 형평 원칙에서 형평의 원칙 및 관련 사정 규칙으로까지 발전했다. 그러나 일부 국제조약에는 형평원칙 및 관련사정 규칙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고 주로 국제사법실천을 통한 발전에 대해서만 다루었다. 본 논문은 현재 해양 경계를 획정하는 사법 재판, 중재 재판에서 형평 원칙 및 관련 사정 규칙의 발전 맥락과 실천 의의를 연구하였으며 이는 현재 복잡한 해양 경계 획정 분쟁에 직면하고 있는 중국에게 중요한 법률적 참고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1. 형평원칙 및 관련사정 규칙의 등장과 발전

① 형평 관념의 도입

1909년의 스웨덴-노르웨이간의 그리스바다르나 경계획정안에서 ‘형평’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해양경계획정과 결합되어 사용되었다. 이 사례에서 상설재판소는 처음으로 ‘형평하게 고려’ 한다는 점을 언급하며¹⁾ 관련된 ‘사실 환경’을 고려하여 판단하

1) 스웨덴-노르웨이 그리스바다르나 부근의 해상의 경계획정에 관한 국제중재 재판사건이다. 1908년의 중재협약에 의해 중재재판소에 의뢰되었고 그리스바다르나 어장에서 스웨덴 어민이 노르웨이 어민보다 훨씬 더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바다가재 어업을 행해왔으며 스웨덴이 이 해역이 자국에 속한다는 인식 아래 항로 표지를 설치하

였다.

사실상 형평원칙은 대륙붕 개념과 함께 나오게 되었다. 1945년 9월 28일 트루먼 선언에서 미국과 인접 국가는 형평원칙에 따라 경계획정을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여기에서 형평원칙의 정확한 의미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형평 원칙은 그 후에도 미국의 국내 법이나 1958년의 대륙붕 협약에도 그 관념은 언급이 되었으나 그 의미에 대해 정확한 설명은 없었다.

② 형평원칙의 확립

1969년 북해 대륙붕 경계획정 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정식으로 형평원칙을 해양 경계획정으로 적용하여 판결을 내렸다. 당시 연방독일은 해안선의 지형상 오목한 부분이 있어 덴마크, 네덜란드와 비교하면 불리한 조건이었으나 국제사법재판소는 지형적인 사정을 감안해 판결을 내렸다. 당시 네덜란드와 덴마크는 1958년의 대륙붕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이었지만 서독일은 서명을 끝낸 것일 뿐 당사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6조에 규정된 등거리 방식의 유효성을 둘러싸고 논쟁이 되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트루먼 선언에서 언급된 형평원칙에 원칙적 지위를 부여하였고 “경계획정의 역할은 어떤 해석이 다른 관할권에 귀속되는지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언급할 필요는 없지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은 결과가 공평한가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관련 국가는 원하는 방식으로 경계획정을 할 수 있으나 반드시 결과의 공평을 목표로 하여야 하며 여기서 형평은 하나의 경계획정의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닌 목표”라고 부연하였다. 이 판결은 1982년 국제연합 해양법 협약(이하 협약)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협약 제83조는 국제사법재판소 규약 제38조에 규정에 따라 국제법의 기초 위에 협의로 경계획정을 하여 공평한 결과를 이루도록 해결해야 한다고 대략적으로만 규정하여 추상적이고 많은 여지를 남겨두게 되었다. 1982년 튀니지-리비아 대륙붕 경계획정안과 1985년 리비아-몰타 대륙붕 경계획정안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형평의 개념을 국제법원칙과 결합시켜 모든 관련사정을 고려하여 경계획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③ 형평원칙 및 관련 사정규칙의 형성

국제사법재판소는 2001년 카타르-바레인 사건에서 형평원칙 및 관련사정 규칙을 공식적으로 언급하였고 2002년 카메룬이 나이지리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안, 2007년

고 운영해온 사실에 부합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스웨덴의 항로 표지 설치 및 운영에 대해 노르웨이는 항의한 바 없고 표지 설치 및 운영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됨을 고려할 때 그리스바다르나에 대한 스웨덴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노르웨이·스웨덴 중재재판소 1909.10.23 판결, 11 RIAA 147).

니카라과가 온두라스에 대해 제기한 소송, 2009년 루마니아-우크라이나 경계획정안, 2012년 벙골만 경계획정안에서 구체적인 규칙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21세기 이후 국제사법재판소가 형평원칙이 확정된 규범이 될 수 있도록, 추상적인 개념에서 실제하는 규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형평원칙 및 관련사정 규칙의 의의

국제중재안과 국제사법재판소의 해양경계 관행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국제사법관행으로 나온 형평이라는 용어가 기존의 프랑스어에서 벗어나 해양경계획정 영역과 결합되어 응용된 것, 형평의 추상·모호한 점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 법관들이 형평의 실천과 관행을 통해 추상적 형평의 정의를 이념으로 실질적인 관련 사정을 고려한 것은 단순히 엄격한 규칙으로 요소들을 고려하려 함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결과의 공정함을 강조하였고 공평한 경계획정 절차를 적용하였다. 따라서 현재의 형평원칙 및 관련사정 규칙은 국제사법재판소와 중재기구 판례를 바탕으로 발전된 해양경계획정 규칙으로 결과의 공정성 확보, 관련 사정 고려, 공정한 경계획정 절차와 방법 등을 실천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3. 동중국해 경계획정에서의 형평원칙 및 관련사정 규칙 적용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제사법기구의 실천과 관행을 통해 형평원칙은 추상적인 원칙에서 구체적인 규칙으로 전환되었고 그 의의와 관련 규칙이 점차 분명해지고 있으며 일반 국제관습법으로 발전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규칙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하여 동중국해 경계획정에서의 중국의 기본 주장을 지지할 수 있을까.

① 형평 원칙 및 관련사정 규칙의 형성은 자연적 연장의 원칙의 사라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자연적 연장은 연해국의 해안선에서 바다 쪽으로 계속 연장되는 것을 가리킨다. 연해국은 육지영토에 대한 주권에 따라, 또 대륙붕에 대한 주권행사의 확장에 따라 해상탐사 및 자연자원 개발을 목적으로 하여 육지영토가 해양 또는 해저로 자연적으로 이어지는 대륙붕 구역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 즉 이는 고유의 권리이다. 이런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고 어떤 특정한 법률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국제사법재판소가 1985년 리비아-몰타 사건에서 몰타가 제시한 거리 기준을 채택한 것은 리비아 지질학자가 제시했던 해저에 대륙붕의 단절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불명확하고 불완전하여 법원이 대륙붕의 근본적 존재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처럼 어떤 국가가 분쟁중인 대륙붕이 근본적으로 분리되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등거리선이나 중간선이 아닌 자연연장 원칙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② 대륙붕 경계획정에서 형평원칙 및 관련사정 규칙과 자연적 연장의 원칙은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형평 원칙은 자연적 연장의 원칙이 대륙붕 경계획정에서 중요성을 가지며 기본 원칙이라 강조한다. 1969년 북해 대륙붕 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관련국가가 형평 원칙에 따라 일체의 관련 사정을 고려해 경계획정을 하여 각국이 최대한 자국 영토의 자연적 연장에서 나온 대륙붕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다른 국가 대륙붕의 자연적 연장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③ 현재 형평 원칙 및 관련사정 규칙과 등거리 및 특수성 원칙의 상호 보충의 추세

구체적인 사안에서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등거리선 방식은 국제사법재판소의 경계획정의 우선적인 방법이 되었다. 이에 기초하여 동중국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국의 주요 과제는 지리, 지질구조 부분에서 상세하고 과학적인 증거로 오키나와 해구의 구조와 인근의 대륙붕이 다른 구조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즉 동중국해에 두 개의 대륙붕이 존재함을 입증하고 근거를 통해 일본의 등거리선 방식이 불합리함을 반박해야 한다.

④ 비례 검증의 원칙은 중국의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획정 주장의 합리적인 보조 수단이다.

양국 해안선의 길이 비율 차이로 북위 약 30도 이남의 해역은 해안의 일반적인 방향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중국은 전체 해안선의 자연적 곡률을 따지지 않고 일본은 섬의 해안선 주위의 각 섬의 둘레를 따지지 않고 각 섬의 가장 큰 길이를 계산하면 중일 양국의 해안선 길이의 비율을 64:36이다. 따라서 중국의 동중국해에 대한 주장은 합리성을 가진다.

앞서 기술한대로 중국은 동중국해 쟁의를 해결할 때 자연적 연장의 원칙과 형평 원칙 및 관련사정 규칙을 계속해서 주장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충분한 과학적인 논증으로 오키나와 해구가 근본적으로 중단된 것임을 입증하여 이를 납득할만한 이유로 주장해 일본의 중간선 주장에 대해 반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비례의 방식을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여 중국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획정의 주장의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